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1-2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3. 7. 20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삼성바이오로직스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 201-2번지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,699.39㎡	건폐율		층수 지상 : 1층	
	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	구조 일반철골구조		건축물 동수 주 1동, 부 동	
	최고높이 8.4m	용적률		연면적 합계 1,671.37㎡ 철거면적: 185.83㎡ 철거(기동 1개소, 보 7개소 해체), 내부 마감재 1,485.54㎡ 철거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체)분야	○ 작업진행에 따른 이동식 CCTV의 설치위치를 필요하다고 판단 시 현장상황에 맞게 이동하여 해체기록 유지 요망. ○ 대상 구조물은 RC구조물과 달리 경량구조물로 상부 철골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이 상향되는 경우, 구조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 해체 과정에서 본 구조물이 일시적으로 부분개방형 조건이 되는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바람.			
	(공통)분야	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위원회 제시조건, 제반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반영할 것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6-5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3. 7. 20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에스디프런티어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 176-5번지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1,449.38㎡	건폐율		층수 지하: 2층 지상 : 7층	
	주 용 도 판매시설	구조 철근콘크리트		건축물 동수 주 1동, 부 동	
	최고높이 37.5m	용적률		연면적 합계 63,124.43㎡ 철거연면적: 내력벽 2.1㎡, 조적벽 2.1㎡, 	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7-5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3. 7. 20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현대건설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97-5번지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116.64㎡	건폐율	층수 지상 : 1층	
	주 용 도	가설건축물	구조 경량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주 2동, 부 동	
	최고높이	2.6m	용적률	연면적 합계 1,116.64㎡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체)분야	[권고사항] ○ 설계도서 상의(해체계획서 p.27) 기둥 및 보의 간격 및 배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, 현장조사 시 확인한 내용과 비교 · 확인 후 시공하기 바람.			
심의결과	[○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